연금저축계좌 핵심 설명서

※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연금저축은 **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**해야 **세제혜택**을 받을 수 있는 **장기투자상품**이며 **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**

◇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(금융권역별 비교)

구분	증권사	은행	생명보험	손해보험
상품	연금저축펀드계좌	연금저축신탁	연금저축보험	연금저축보험
납입방식	자유납	자유납	정기납	정기납
연금형태	확정	확정	종신, 확정	확정(~25년)
예금자보호법	적용되지 않음	적용	적용	적용

◇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납입기간에는 **세액공제**를, ②연금수령 시에는 **연금소득세**(5.5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적용[1]받게 되어 **유용**할 수 있습니다. (☞다만 **연금수령**이란, **아래 요건**을 **모두 충족**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임)

1)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: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수익

- 세액공제 :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.2% 또는 16.5%[1]까지(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 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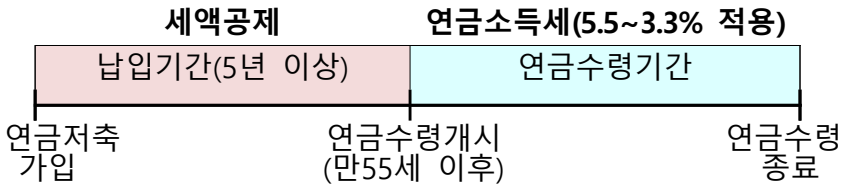
1) 종합소득 4,5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인 경우

※ ISA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납입하는 경우, 연금계좌 기본납입액으로 보며 전환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 한도) 추가 세액공제 가능

- **연금수령 요건**(연금소득세 적용)

1) 가입후 **5년 경과**하고 **만55세 이후 연금수령**을 개시
2) 매년 **연금수령한도 이내**에서 **인출**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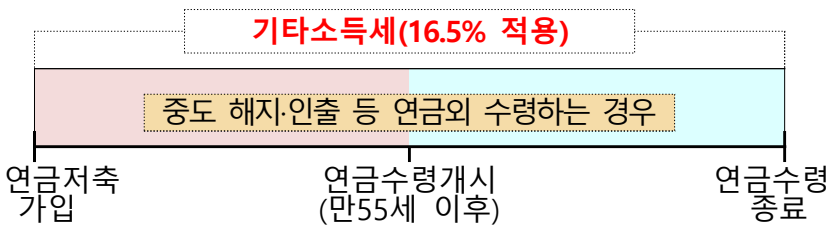
연금수령 한도 = 연금계좌의 평가액 ÷ (11 - 연금수령연차) × 12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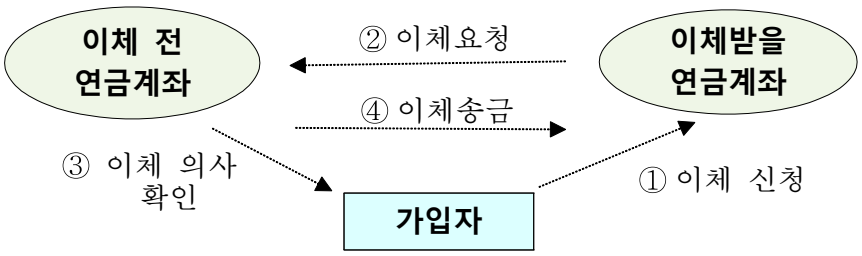
◇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중도 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("**연금外 수령**")의 경우 **기타소득세**(16.5% 지방세 포함)가 부과[1]되므로 **연금**으로 **수령**하는 **경우**(5.5~3.3%)보다 **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1) 기타소득세 적용대상 :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+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



◇ **연금계좌 상호간**에 **이체**가 가능하며, **연금저축 이체 시**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**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.**



◇ 가입자 유의사항 :

-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고, 투자성향이나 목적, 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 후 신중히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,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 이외의 방법(중도해지 포함)으로 인출 시,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, 금융감독원, 금융협회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◇ **위험등급확인 :** 다올투자증권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(초고위험)에서 5등급(초저위험)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◇ 고객 권익보호사항

[위법계약해지]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 행위금지,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
[자료열람요구]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※요구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제공

※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연락처 : 다올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 1588-3100,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(https://www.daolsecurities.com) 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핵심설명서는 연금저축 핵심내용을 담고 있으며, 세부내용은 약관 등을 확인바랍니다.

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·위험,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고,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, 최대손실가능성, 수수료, 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,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■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.